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2210

제출연월일: 2024. 7. 24.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면허·등록, 자격의 취득,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에 따른 면허·등록이나 자격의 취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9조·제12조).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제2조(「도선법」의 개정)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피성년후견인
- 제3조(「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의 개정) 선박평형수(船舶平 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4조(「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5조(「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제37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신적 제약으로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0조의8제1항제2호 중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를 "제30조의3제1항 각 호의"로 한다.

제7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 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제8조(「어선법」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피성년후견인
- 제9조(「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10조(「염업조합법」의 개정)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미성년자
- 제11조(「항로표지법」의 개정)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피성년후견인
- 제12조(「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피성년후견인
- 제13조(「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제14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15조(「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해양조사 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제5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16조(「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제17조(「해운법」의 개정)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성년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	
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u> 피한정후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6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	제26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
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준) ①
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수경	
비원이 될 수 없다.	
<u>1.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u>	1.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피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u>정후견인</u>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6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	
선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2. 피성년후견인
<u>견인</u>	
3.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2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	
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
무) ① (생 략)	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7조에 따	②
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사람을 산지경매사로 임명하	
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1.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37조의3(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없	
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삭 제></u>
<u>견인</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제37조의16(면허의 취소 및 정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	①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u>제1호</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제1호 또는 제1호의2</u>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정신적 제약으로 수산질
	병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① 다음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	
다.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u><삭 제></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① 해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①
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	
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	
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u>	2. <u>제30조의3제1항 각 호의</u>
<u>4호까지의</u>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	제16조(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
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	<u>1. 미성년자</u>
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31조의3(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2. 피성년후견인
<u>견인</u>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
원회) ① ~ ③ (생 략)	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	<u>2. 미성년자</u>
는 피한정후견인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1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	
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삭 제></u>
<u>견인</u>	
3. • 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	제23조(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2. 피성년후견인
<u>견인</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8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	
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2.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
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대행	
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u>또는 미성년자</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면허의 제한) 다음 각 호	제13조(면허의 제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	
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u>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u>.</u>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1. 피성년후견인
<u>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u>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2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	
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u>.</u>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1.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	제50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
업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업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1.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	<u><삭 제></u>
<u>୍</u>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8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	<u>1. 미성년자</u>
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